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'24년 만료되는 대기배출총량 재할당('25~'29) 대상 자료제출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 사업장의 할당기간('20~'24)이 만료되는 금년도 11월말까지 재할당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, [붙임]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**2024. 8. 2.(금)까지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현재 환경부는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규칙 [별표1]의 최적 방지시설 기준 및 종류 관련 법개정을 추진중으로 향후 개정시 제출자료 이외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총량할당 검토를 위한 유관기관(환경부) 검토기간이 다소 소요 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관련 서식 및 자료는 기후환경관리과 홈페이지(https://www.gg.go.kr/gg_env_manage)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(공지사항, 339번 참조) 작성제출

<제출서류>

- 가.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재할당 신청서(홈페이지 서식 참조)
 - 나.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(원본) 및 사업장 공문
 - 다.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(신고증명서) 사본(최신내역 반영)
 - 라. 최근 5년간 제출된 배출구별 활동도(연료사용량, 제품의 생산량) 증빙자료
 - 마. 최근 5년간 배출구별 배출량 시스템 증빙자료(원본대조필 날인)
 - 바. 배출구별 최근년도(2023년) 평균 배출농도 증빙자료(원본대조필 날인)
 - 사.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저감 계획서 1부
- ※ 최근 5년은 금회년도('24년)을 제외한 직전년도 5년간('19년~'23년)임.

붙임 대기총량사업장 할당량 신청서(서식) 1부.

경기도 직사



수신자 '25~'29년 대기총량 재할당 대상 사업장(53개소)

주무관 이상규 환경관리2팀 기후환경관리 전결 2024. 7. 11.
장 한명희 과장 김상철

협조자

시행 기후환경관리과-20249 (2024. 7. 11.) 접수

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신관3층, 구관 1층 경기도광
역환경관리사업소 (매산로3가) / <http://www.gg.go.kr/>

전화번호 031-8008-8231 팩스번호 031-8008-8239 / gyuleesa@gg.go.kr / 대국민 공개

문서 한 장을 인쇄할 때 이산화탄소 5g이 발생합니다